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의료취약지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간호조무사의 간호서비스 제공〉

■ 이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959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박동찬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 의견	3
1. 개정안의 주요내용	3
2. 검토 의견	4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13

I. 개요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개호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6. 7. 15.

(3) 회 부 일 : 2026. 7. 2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3월 27일부터 통합돌봄서비스가 전면 시행되었으나, 보건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의료취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은 제도 운용을 위한 보건의료 인력 수급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

특히 거동이 불편한 돌봄 대상자에게 필수적인 방문 간호서비스의 경우, 현행법이 서비스 제공 주체를 간호사로만 한정하고 있어 간호 인력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농어촌 지역은 제도가 시행되었음에도 통합돌봄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지 못하는 심각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한편, 의원급 의료기관 등 현장에는 실무 역량을 갖춘 숙련된 간호조무사 인력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의 경직된 자격 제한으로 인해 이들을 적재적소에 투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인력 활용의 제약은 결국 지역 간 보건의료 서비스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돌봄 공백의

피해를 고스란히 전가함으로써 지역 간 통합돌봄 서비스 질 저하 및 심각한 의료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이에 의료취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에 한하여 「간호법」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 등에서 간호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에게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호 신설).

Ⅱ. 검토 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및 ‘인구감소지역’에 한하여 간호조무사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보건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통합지원을 위하여 보건의료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보건의료) ----- -----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u><신설></u>	3. 「 <u>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u> 」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u>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u> 및 「 <u>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u> 」 제2조제1호에 따른 <u>인구감소지역에서 「간호법」 제15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간</u>

3. ~ 8. (생략)	<u>호서비스</u> 4. ~ 9. (현행 제3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	---

2. 검토 의견

-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¹⁾에게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 현행법은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에 입원·입소하는 대신 살던 곳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지원”이란 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이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 등(이하 “보건의료등”이라 한다)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또한 현행법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는 ▲ 보건의료(방문진료, 간호 서비스, 복약지도 등), ▲ 건강관리 및 예방(노인성 질병 및 만성질

1) 통합지원 대상자: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과 장애인 등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통합지원 대상자”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이하 “노쇠등”이라 한다)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환 등의 예방·완화), ▲ 장기요양(방문요양·목욕 등), ▲ 일상생활돌봄(가사·이동·일상활동 지원 등) 등 분야별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의 종류를 명시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분야 서비스의 하나로 간호사의 ‘간호서비스’를 규정하고 있으나, 간호조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간호서비스’란 간호사가 ▲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등의 간호업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²⁾함.

「통합지원 서비스 내용」

제15조(보건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통합지원을 위하여 보건의료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의료기관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진료서비스 2. 「간호법」 제12조에 따른 간호사가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u>간호서비스</u> 3. 통합지원 대상자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유지·회복을 위한 재활서비스 4. 장기입원 및 급성기 치료 이후 회복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등의 의료서비스 5.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 사업 6. 방문 구강관리 7.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가 약국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약지도
--

2) 「간호법」 제12조(간호사의 업무) ① 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1.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3.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4.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

8.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제16조(건강관리 및 예방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지원 대상자의 노쇠,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을 예방하거나 완화하고 일상생활을 지원하며 건강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건강관리 및 예방 등의 활동이 의료, 간호, 복지 등 다학제 간 협력을 통하여 상호 연계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 방문기관을 지정하는 등 통합지원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7조(장기요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쇠등으로 인한 통합지원 대상자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노인성질환에 방사업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제18조(일상생활돌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심신기능을 유지·향상하고 일상생활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도록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재가 자립생활 유지를 위한 식사 등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보건의료기관 등 방문을 위하여 필요한 이동지원 서비스
3. 통합지원 대상자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한 보조기기에 관한 서비스
4.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돌봄을 받을 수 없는 통합지원 대상자가 주간 또는 야간 동안 적합한 시설·기관에 통원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는 서비스
5. 통합지원 대상자의 안전 및 건강 상태 확인 등을 위한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서비스
6. 통합지원 대상자의 기능·건강 상태를 고려한 주거 공간의 확보·제공 또는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지원 서비스
7.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퇴원 또는 퇴소하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서비스
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
9.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서비스

□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체계



자료: 보건복지부

□ 간호조무사는 「간호법」 제15조에 따라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와는 업무 범위 및 자격요건 등에 차이가 있음.

- 간호사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는 반면, 간호조무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론 740시간 및 실습 780시간)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하여야 함.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지위, 자격요건 등 비교>

구분	간호사	간호조무사
법적 지위	의료인	비의료인(보건의료인력)
면허·자격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	보건복지부 장관 자격인정
취득 과정	간호학과(학사·전문학사) 졸업 후 국가시험 합격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 후 국가시험 합격
간호업무에 있어 독자적 판단	가능	제한적 (간호사 또는 의사의 지도하에 업무 수행)

「간호법」

제4조(간호사 면허) ① 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사람
2.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사람

제6조(간호조무사 자격인정 등) ①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제8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라 한다)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로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4.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5.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로서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12조(간호사의 업무) ① 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1.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3.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4.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병원급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는 후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하여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5조(간호조무사의 업무) ①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같은 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간호법 시행규칙」

제2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 ① 「간호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다음 각 호의 과정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74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 과정
2.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780시간 이상의 실습교육 과정. 이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실습교육 과정이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한편, 통합돌봄 시행과 관련하여 의료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간호인력 등의 부족으로 인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의 연계 및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³⁾.

3) 통합돌봄 관련 간호인력 부족에 관한 언론 기사 보도 현황

「‘초고령 사회’ 대응 통합돌봄 시행 코앞인데…간호 인프라 확충 시급」(아시아투데이, 2026.2.2.)

- 내달 ‘지역사회 돌봄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간호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제도 시행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조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다.
- 2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초고령사회에 맞춰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서는 전담 인력 없이 기존 인력을 재배치 하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간호 인력 부족이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남형 통합돌봄 서비스?...아직은 ‘제각각 서비스’」(광주일보, 2026.4.9.)

- 의사가 없어 방문진료 자체가 어려운 지역이 있는가 하면, 간호사 채용이 되지 않아 필요한 서비스 연계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도서지역에서는 병원 접근성 한계로 의료 연계 자체가 어려운 상황도 드러나고 있다.
- 영암군의 경우 읍·면 내 간호사, 요양보호사를 채용하지 않은 1인 의원밖에 없다 보니, 결국 지자체 보건소가 별도로 채용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채용공고를 4차례 냈는데도 지원자가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 진도군도 마찬가지로 의원 1곳과 연계하는 데 성공했지만, 간호사와 요양보호사가 없어 채용공고를 연거푸 올리며 지원자가 나오기를 기다리고만 있다.

□ 개정안은 의료취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에 한하여 간호조무사도 간호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봄공백을 완화하고, 방문간호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이해됨.

□ 또한, 현재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 경력이 있고 관련 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서 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른 방문간호를 수행⁴⁾할 수 있으므로, 간호조무사의 기존 방문간호 경험을 통합돌봄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간호조무사의 방문간호는 ▲ 건강관리(투약관리, 기초건강관리, 인지훈련 등)와 ▲ 간호관리(욕창관리, 영양관리, 통증관리, 호흡기간호, 투석간호, 구강간호 등) 등의 업무로 이루어져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다.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과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업무·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법 제2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방문간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간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자

나. 「간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경력이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4)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재가 장기요양기관에서 활동 중인 간호조무사는 6,441명임.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치과위생사(구강위생 업무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방문간호)

- 건강관리(관절오그라들 예방, 투약관리, 기초건강관리, 인지훈련)
- 간호관리(욕창관리, 영양관리, 통증관리, 배설관리, 당뇨발관리 등, 호흡기간호, 투석간호, 구강간호)

□ 다만, 간호조무사는 「간호법」에 따라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서 간호사 또는 의사의 지도하에 간호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방문간호 역시 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참고로, 2025년 말 기준 간호사 면허 보유자는 약 55만명, 간호조무사 자격 보유자는 약 94만명이며, 이 중 실제 활동 중인 인력은 간호사 약 29만명, 간호조무사 약 22만명 수준임. 또한 의료취약지 및 인구감소지역에서 활동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각각 약 4만 5천명과 4만 3천명 수준임.

- ‘의료취약지’는 대구 군위군, 인천 강화군 등 98개 지역이고, ‘인구감소지역’은 부산 동구, 대구 남구 등 89개 지역임.

※ 의료취약지 및 인구감소지역 현황: [참고]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수(2025년 말 기준)>

(단위: 명)

구분		간호사 수	간호조무사 수
전체인원 ¹⁾		550,225	942,095
활동인원 ²⁾		298,642	226,445
	의료취약지	20,262	23,042
	인구감소지역	25,097	20,648

주 1) 보건복지부 면허관리시스템 기준

2)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인력 수(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

자료: 보건복지부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구분	제시 의견
보건복지부	<신중검토> ○ 통합지원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상관없이 간호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공감하나, ○ 간호조무사는 현재 의료법 체계 내에서 간호조무사의 단독 의료행위 수행이 제한되는 만큼,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찬성> ○ 지역 의료현장에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춘 간호조무사를 통합돌봄 체계에 활용토록 하는 본 개정안은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국가적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임. ○ 지역을 불문하고 고령 인구의 재택의료 및 통합돌봄 수요는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통해 수년간 안전성과 전문성이 입증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와 직무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한 간호조무사를 전국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가적 돌봄 인프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돌봄 체계를 구축하는데 일조할 것임.

구분	제시 의견
대한간호협회, 대한조산협회, 한국방문간호사회	<반대> ○ 의료취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의 간호·돌봄 공백에 대한 해법은 간호사 중심의 방문간호 체계 강화와 의료취약지역 간호인력 확보 지원이어야 함. ○ 특정 직역 명칭 추가를 허용할 경우, 의료기사 8개 직종과 사회복지사 등 다른 직역의 연쇄적 명칭 추가 입법 요구로 이어질 수 있음. ○ 「간호법」상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 인력으로, 독자적 간호서비스 제공 주체로 명시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와 충돌함. ○ 환자 안전사고 발생 시 간호사, 간호조무사, 수행기관, 지방자치단체 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음. ○ 의료취약 지역일수록 더 전문적이고 안전한 간호서비스가 필요하므로, 전문성 기준을 낮추는 방식은 부적절함. ○ 의료취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밖의 지역 주민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음. ○ 인력 개편을 논의하기에 앞서, 전국 900여개 방문간호 기관의 전문인력을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안으로 편입하여 원활히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제도적 결함 개선에 우선적으로 착수하여야 함.

구분	제시 의견
대한의사협회	<수정수용> ○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오랜 임상 경험을 축적한 숙련된 간호조무사 인력이 근무하고 있는바, 이들의 지역돌봄 참여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음. ○ 다만 동 개정안은 ①의사의 지도·감독 및 의료적 연계, ②수행 가능한 업무의 범위와 한계, ③적용대상 지역의 과도한 범위, ④자격·경력·교육요건, 책임소재에 관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음. ○ 이는 현행 방문간호 서비스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둔 채 수행 주체만을 확대하여, 현장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과 환자안전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크고, 결과적으로 의료취약지역 주민에게 오히려 불완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개정안이 해소하고자 하는 지역 간 형평성을 도리어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수정·보완이 필요함.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반대> ○ 방문간호는 의료기관 내 통제된 환경과 달리, 의료인력과 장비가 없는 독립된 공간에서 즉각적 대응과 판단이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영역임. - 간호사와 비교하여 교육과정 및 실무 숙련도에서 차이가 있는 인력이 이를 전담할 경우 감염 및 의료사고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의료취약지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이라는 이유로 간호사가 아닌 보조 인력의 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은 “의료 공백 및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에 상관없이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보장한다”는 법안의 목적과 달리, 역으로 거주 지역에 따른 서비스의 질적 차별 및 평등권 침해 결과를 초래함. ○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간호사에게 진료 및 처방권을 전면 허용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간호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간호조무사에게 간호사의 고유 업무를 맡기는 것은 현행 의료 면허체계에 어긋남.

문 의 처

02)6788-5496

【참고】	의료취약지 및 인구감소지역 현황
-------------	--------------------------

1.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현황[「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61호)」]

구분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98개소)
대구(1)	군위군
인천(2)	강화군, 옹진군
경기(5)	가평군, 동두천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강원(15)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8)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진천군, 충주시
충남(11)	공주시, 금산군,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전북(9)	고창군,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17)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경북(15)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영덕군, 영주시, 영양군, 영천시, 예천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14)	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사천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통영시,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제주(1)	서귀포시

2. 인구감소지역 현황[「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 2024-15호)」]

구분	인구감소지역(89개소)
부산(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3)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2)	강화군 옹진군
경기(2)	가평군 연천군
강원(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5)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